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상시 협의체계 구축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5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상시 협의체계 구축	3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5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

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상시 협의체계 구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및 성장센터 협의체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④ (생략)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진흥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이하 “성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⑤ ~ ⑫</u> (생략)	<u>⑥ ~ ⑬</u> (현행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u><신설></u>	<u>제20조의2(성장센터 협의체) ① 진흥원은 제2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관련 협력 및 교류</u>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이하 “성장센터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성장센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제20조제10항----- ----- ----- ----- ----- -.
제2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생략)	제2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3항----- ----- -----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 정책은 지역의 고용구조, 산업특성, 사회적 수요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지원체계 및 정책협력의 법적 기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지방 간 정책연계 및 현장 의견 반영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및 성장센터 협의체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사회적기업 정책의 분권적 운영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재 총 19개소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이하 “성장센터”)가 이미 운영 중으로, 회원기업에게 경영진단,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자원연계 등 기업의 성장 단계와 개별 수요에 따른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센터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0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이하 “성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성장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성장센터가 진흥원 소속으로 두는 지역별 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에 성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안 제20조의2제1항은 “진흥원이....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성장센터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82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개정안의 성장센터 협의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각호1)에 따라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관련 협력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성장센터 협의체 구성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82조보다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

1) 「사회적기업 육성법」 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상기한 일부 조문에 관한 보완 외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

참고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성장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설립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 설립목적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관」 제1조)

□ 연혁

- '10. 6. 8: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법률안 제10360호 공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규정(법률 제20조) 시행('10.12.9.)
- '10. 12. 31 : 진흥원 설립 등기('11. 1. 17. : 진흥원 업무 시작)
- '11. 1. 24 : 기타공공기관 지정
- '12. 6. 20 : 협동조합지원 업무 수탁(기획재정부)
- '17. 4. 12 : 제1호 성장지원센터(서울1센터) 개소
- '18. 12. 18. :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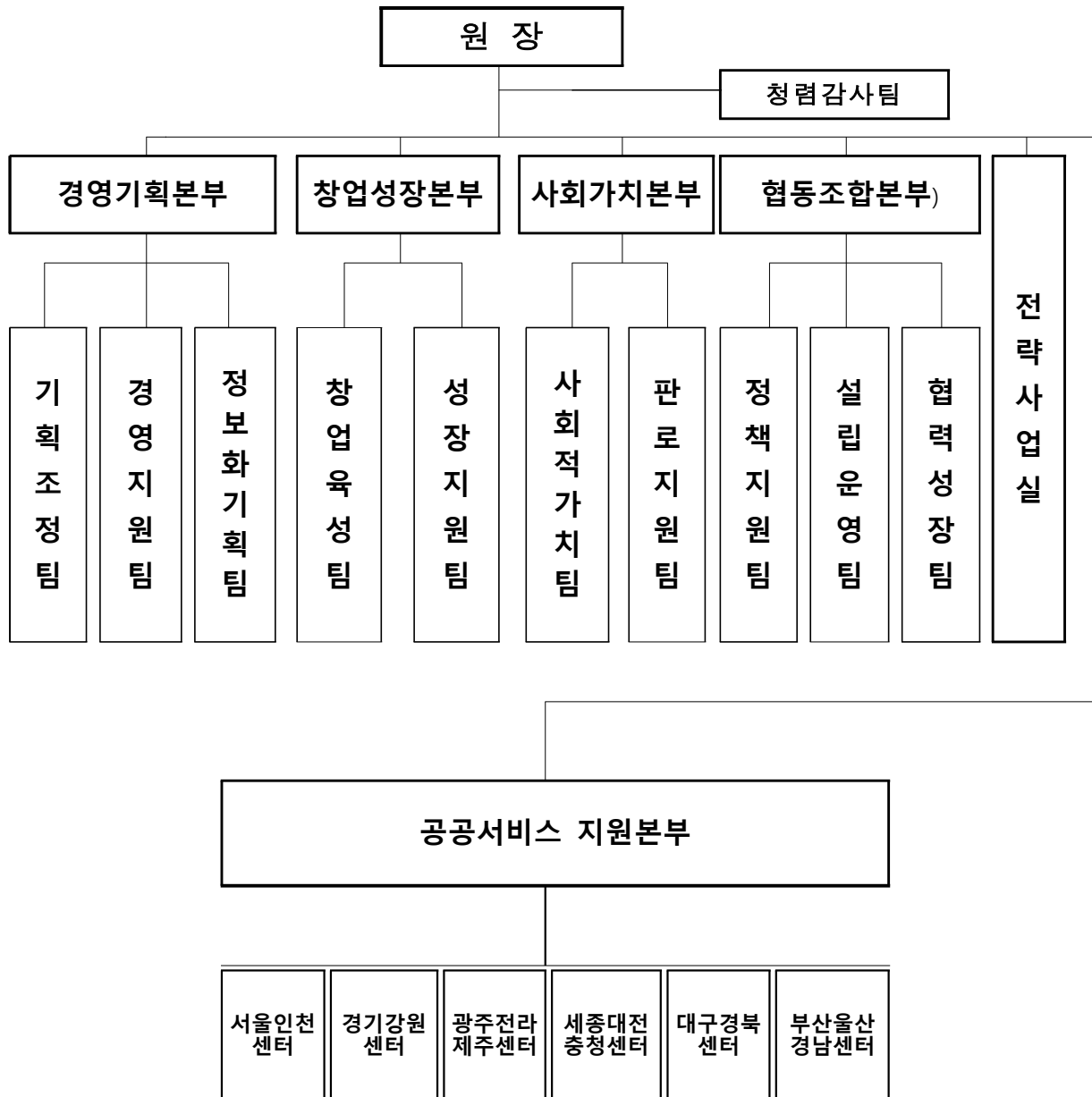
(단위 : 명)('26.1. 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기타
	정 원	140	1	3	12	21	42	53	8
합계	현 원	125	1	2	10	18	37	50	7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감률
계	29,376	69,349	136.1%
사회적기업 지원	28,276	66,899	136.6%
협동조합 활성화	1,100	2,450	122.7%



(공공서비스 지원본부) 공공행정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총 19개 성장지원센터* 운영 중

* 6개 통합센터: 인증 및 SVI 평가 등 공공행정 업무, 창업 지원, 교육 및 상담 등 경영·성장 지원, 입주기업 등 네트워크 지원 등

* 13개 일반센터: 창업지원, 경영·성장 지원, 입주기업 지원 등

□ 성장지원센터 현황(■은 통합센터, 그 외 일반센터)

구 분	서울인천 센터	부산울산경남 센터	전북	경기강원 센터	대전	대구경북 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9층)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 관리공단 수영사옥 (4·5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DNB빌딩 (5·6층)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6층)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 눈높이 사옥 (3·4층)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 아울렛 (10·11층)	
구 분	울산	강원	광주전라제주 센터	서울2	충남	경북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8층)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1·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486 KH타워 (4·5·6층)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길 30(남대문로 5가 827)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3 (3·4·5층)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6·8층)	
구 분	경남	인천	전남	제주	충북	세종대전충 청센터	경기(북부)
소재지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7 (7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송도동) 애니오션빌딩 (11, 12층)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호남동) 주식회사 KT 목포빌딩 (9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296-8 제주관광대학 교육관 (3, 4, 6층)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15-1 우민타워 (3층)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A (6층)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 진산메디 프라자 (4·5층)

□ 운영 및 목적

- 전국 19개소 성장지원센터*의 현장 밀착 운영을 통한 지역 친화적 사회적기업 거점공간 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지원

* 서울1(성수), 서울2(서울역), 경기남부(성남), 경기북부(양주), 인천,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세종, 충북, 충남,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성장지원센터 사업 내용

- **(공공행정)** 인·지정,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협동조합 설립인가·경영공시 등 공공행정 기능 수행

* 권역별 6개 센터를 통해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

- **(성장지원)** 센터 운영·관리 및 지원사업

- **(센터 운영·관리)** 회원기업 모집 및 상주 선발, 센터 시설관리 등
- **(센터 지원사업)** 교육, 멘토링, 자원연계를 통한 초기·도약기 기업 역량 강화 및 인증 취소 위기기업 대상 전문 진단 및 솔루션 제공